

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68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폐지이유

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·운영하였으나 「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」가 2020. 7. 1 전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1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- 2) 「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0. 7. 22.~8. 10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